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교육감이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평가서 공개에 필요한 사

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2호 중 “시설”을 “시설(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총량이 신고대상 규모인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① 법 제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한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계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부 칙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u> <u>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u> <u>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u> <u>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u> <u>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u> <u>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u> <u>다. (생 략)</u>	<u>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u> <u>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u> <u>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u> <u>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u> <u>인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u> <u>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u> <u>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u> <u>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u> <u>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u> <u>자 또는 교육감이 공개시기를</u> <u>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u> <u>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u> <u>하여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u> <u>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u> <u>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u> <u>않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u> <u>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u> <u>1.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u> <u>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2.교육환경평가서 등에 해당사</u> <u>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u>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u><신 설></u> ①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평가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한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계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②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u>시설</u> 3. ~ 5. (생략) <u>②</u> · <u>③</u>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시설(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총량이 신고대상 규모인 시설을 포함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